

의안번호	제 171 호
의 결 년 월 일	2006년 8월 1 일 (제 171 회)

음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제 출 자	음 성 군 수
제출년월일	2006년 7월 27일

음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 정부의 8. 31.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 01. 11일 공포되어 2006. 07.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행위자에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서,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의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며,
- 동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안 제3조)
 -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용지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하고자 함.
 - 기반시설부담금은 국가에 100분의 30이, 지방자치단체에 100분의 70이 각각 귀속된다.(법 제4조)
- 특별회계의 세입(안 제4조)
 - 건축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 특별회계의 세출(안 제5조)
 -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사용함.

3. 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법률 제7848호 : 2006. 01. 11)

5.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 결과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 2006. 06. 06~06. 26(의견없음)

7. 조례규칙심의회 : 2006. 06. 29(심의결과 : 원안통과)

8. 제안자 의견

- 음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 시행됨에 따른 조례 제정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음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장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한다.

제6조(부담금의 사용제한) 군수는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및 관리)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제정에 따른 관련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

-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국가에 100분의 30이, 지방자치단체에 100분의 70이 각각 귀속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국가 귀속분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④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